

화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6. 4. 16. 홍 이 식 의원외 4인
- 나. 회 부 일 자 : '96. 4. 16.
- 다. 상 정 일 자 : '96. 4. 25. (제4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 이 식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 (94. 7. 6)의 개정 공포에 따라 제34회 임시회(95. 7. 14)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운영.총무.산업건설의 3개 상임 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장의 직인을 조각 사용코자 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조각 사용코자 조례에 삽입
-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 규격 조례 별표에 삽입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재월)

- 본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게 되므로 상임위원장 직인의 조각 사용은 당연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음.
- 단 직인의 사용을 의회 내부에서 공문서 발신에만 사용토록 함.

4. 질의 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론요지

" 생 략 "

6. 심사결과

『원안가결』

7. 첨 부 : 화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6. 심사결과

『원안가결』

7. 첨부 : 화순군의회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 년월일 : 1994. 4. 16.

제 출 자 : 홍이식 의원외4인

1. 제안이유

- '96. 7. 6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
- '95. 7. 14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3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을 조각 사용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조각하여 활용코자 함.

화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 공인 조례중 다음을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(종류)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화순군의회 의장
2. 화순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
3.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
4.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
5. 화순군의회 사무과장

제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화순군의회 (상임) 위원회 위원장 직인은 화순군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다만, 의장의 승인을 얻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.

제4조중 "별표"를 별지의 "별표"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 표)

공인의 규격

1. 화순군의회 의원 : 3.6 센티미터
2. 화순군의회 의장의 직인 : 자치단체장 직인규격과 동일
3. 화순군의회 (상임) 위원장 직인 : 자치단체장 직인규격과 동일
4. 화순군의회 사무과장 직인 : 사무관리규정 별표1 관인의 규격 준용

신. 구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7조 (종류) ① (생 략)</p> <p>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화순군의회 의장 (신 설) (신 설) (신 설)</p> <p>2. 화순군의회 사무과장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 (신 설)</p>	<p>제7조 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화순군의회 의장</p> <p>2. 화순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</p> <p>3.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</p> <p>4.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</p> <p>5. 화순군의회 사무과장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화순군의회 (상임)위원회 위원 장 직인은 화순군 의회내에 발신하 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 에 사용할 수 있다.</p>